

의안
번호

1010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묘정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묘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0
----------	------

발의연월일 : 2025. 6. 19.

발 의 의 원 : 김묘정·김경희·김남수·김상현·문순규·박선애
박해정·백승규·서명일·심영석·이우완·이원주
전홍표·정순욱·진형익·최은하 의원 (16명)

1. 제안 이유

- 레저산업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도세와 국세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받고 있는 실정
-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징수 업무와 행정 비용을 부담함에도 세수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임
- 이에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세에도 징수교부금을 부과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함

2. 주요 내용

-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10%로 상향하라!
-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레저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징수교부금을 부과하라!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장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건의문

기초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현재 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창원시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광명의 경륜과는 달리, 경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이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끝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세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모순이며, 이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레저산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그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3%에서 10%로 상향하고, 현재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교육세에도 징수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예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레저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10%로 상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여 레저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도 징수교부금을 부과하라!

2025년 6월 일

창 원 시 의 회